

광주학살 살인정권 여성고문 강간정권 온 민중과 교회의 이름으로 처단하자!!

■ 검찰발표에 대한 변호인단의 견해 ■

＝ 부천서 성고문사건에 대한

검찰의 왜곡발표를 전면 거부한다.！＝

1. 검찰의 수사결과발표에 접한 우리들 변호인단은 분노에 앞서서 깊은 슬픔과 절망을 가눌길이 없다.

우리가 아는 한 이 사건은 그 동안의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미 그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인력이 총동원 되다시피 한 가운데 연일 불철주야로 사건당사자와 참고인 43명에 대한 집중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권양의 모든 주장은 하나하나 진실과 부합됨이 명백히 입증되어 갔고 반면에 범행은폐를 위하여 꾸며된 문귀동의 모든 주장과 그를 변호하기 위해 조작된 부천서 간부진 및 형사들의 모든 진술내용은 날탈히 거짓임이 판명되었다.

한마디로 그동안의 모든 검찰수사결과와 권양측의 일방적이며 완벽한 승리로 귀결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은 그동안 전례없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 사건 수사에 임하였으며 그 결과 권양의 성고문 주장이 더이상 의심할 여지없는 확고부동한 진실임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고심끝에 찾아낸 진실을 발표과정에서는 허겁지겁 왜곡하고 은폐해버렸다.

“폭언·폭행만 있었고 성적모욕은 없었다”는 검찰의 발표내용은 검찰이 그동안 모든 노고를 기울여 도달한 수사결론을 스스로 뒤엎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대체 어떻게하여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하여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검찰발표과정에서 검찰권의 독립적행사를 저해하는 외부세력의 작용이 개입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향간의 소문대로 당초에는 문귀동을 구속할 방침이었다가 급작히 기소유예방침으로 전환한 것이었다면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검찰의 소신과 명예는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검찰의 발표내용을 믿지 않는다.

국민들 중 누구도 검찰의 발표내용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단언하거니와 다른 누구보다도 검찰 자신이 스스로의 발표내용을 믿지 않을 것이다.

2. 우리가 검찰의 발표내용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문귀동은 당초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문귀동 본인이 권양을 6.7. 저녁 7:45분 경부터 9:45분경까지 이흥기형사등의 입회 아래 단 한차례 조사한 일 밖에 없다고 주장 하였고 또 6.6.에는 서에는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일 송추에 놀러갔다는 알리바이까지 제시하였다. 문귀동은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완강하게 위 주장을 유지하다가 알리바이가 깨어지고 제반 관계증거에 의하여 위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나게 된 후에야 비로소 진술을 번복하여 권양의 주장대로 자신이 권양을 6.6. 새벽과 6.7. 아침 및 밤 중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6.7. 밤중에는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입회형사가 없는 가운데서 조사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 부천서 형사 이흥기는 실제로는 6.6. 새벽 문귀동이 권양을 조사할 당시 (“1차 성고문”당시) 입회하였던자였고 권양이 누차 그 사실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문귀동의 허위진술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굳이 6.6. 새벽에 입회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6.7. 저녁에 자신이 문귀동의 조사현장에 입회하였던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다가 나중에와서야 이를 번복하고 권양의 주장이 진실임을 자백하였다.

사건 당시의 부천서 수사과장이었던 경감 유희수 또한 검찰조사시 문귀동이 6.6. 새벽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고 나아가서는 부천서장 옥봉환이 6.6. 아침 10시 이후에야 서에 출근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수사결과 위 옥봉환이 권양의 당초 주장대로 6.6. 새벽에 출근하였던 사실이 판명됨으로써 위 유희수의 진술은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부천서 형사 김해성은 당초에는 위 문귀동의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6.7. 밤에 문귀동이 권양을 조사할 때 형사 이흥기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진술을 하다가 나중에 이흥

기가 진술을 번복한 후에야 비로소 당일 이홍기를 본 사실이 없다고 자백하였다.

뿐만아니라 부천서 형사들 중 문귀동이 6.7 밤 조사시 옆에 입회했다고 주장한 형사들과 그 날 밤 권양을 유치장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하는 형사까지 나타나서 위 문귀동의 허위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다가 나중에 모두 조작임이 판명되었다.

요컨대 문귀동의 당초의 허위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천서 전체가 동원되다시피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검찰발표와 같이 문귀동이 권양을 조사할 당시 “조사에 열중한 나머지 우발적인 과오로 인하여” 권양의 가슴을 주먹(손등)으로 서너차례 툭툭 건드린 것이 이 사건의 전부라고 한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문귀동은 위와같이 조사했수, 조사시간, 입회 형사 유무 등 가장 기초적인 사실에 관해서부터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을 조작하여 완강하게 버티었으며 더구나 무엇때문에 부천서 전체가 공모하다시피 하여 감히 조직적으로 검찰을 기만하면서까지 집 요하게 위 문귀동의 허위주장을 감싸고 돌았겠는 가?

이것이 우리가 검찰의 발표내용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첫번째 이유이다.

(2) 검찰이 “성적모욕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근거로서 제시한 것은 “양쪽(권양과 문귀동) 주장이 크게 대립되고 있을뿐 아니라 구체적인 목격자도 없다”(조선일보 86.7.17 보도)라는 것이다.

원래 강간이나 강제추행, 간통등 성범죄는 목격자가 없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밀실범죄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에는 제3자의 직접 증언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제반 정황에 비추어 경험칙상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써 얼마든지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판례의 태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권양과 문귀동 중 어느쪽의 주장을 믿어야 할 것인가?

43명의 참고인들을 조사한 끝에 모든 세부적인 정황에 이르기까지 어느것 한 가지도 사실과 다른 점 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권양의 시종일관된 진술 내용과, 처음부터 말리바이까지 조작해가며 어느 것 하나 사실과 부합하는 점이 없는 허위주장을 내세우고 거짓말을 거짓말을 거듭하던 끝에 관계증거에 의하여 파탄에 부딪치자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폭언·폭행”사실만을 자백하기에 이르렀다는 문귀동의 진술내용 중 어느쪽을 믿고 어느쪽을 배척하여야 할 것인가?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고독한 수감생활 속에서 수치심과 굴욕감 때문에 오랜 번민과 망설임

을 거쳐 마침내 여성으로서의 전도를 희생하는 결단을 내리고 차마 입으로 읊길 수도 없는 처참한 피해사실을 눈물로써 호소하기에 이른 스물세살의 미혼처녀의 주장과, 후안무치하게도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내세우며 “욕이라도 한 마디 했더라면 억울하지나 않겠나”고 범행을 깡그리 부인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던 문귀동의 주장 중 어느쪽을 믿고 어느쪽을 배척하여야 할 것인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검찰발표는 결국 “폭언·폭행”부분까지는 문귀동이 자백했으니 사실로 인정하고 그 이상의 “성모욕”행위는 문귀동이 자백하지 않았으니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 문귀동에 대한 이같은 절대적 신뢰가 대체 어떻게 하여 형성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검찰발표내용을 믿을 수 없는 두번째 이유이다.

(3) 검찰발표는 6.7.밤 9시부터 11까지 문귀동이 권양을 조사했던 조사실이 “2면벽이 유리창으로 되어있어 안이 들여다 보이고 조사 뒷편에 있는 무기고의 전등불빛이 조사실 안으로 비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다른 경찰관들이 문귀동의 조사실 앞을 왔다갔다 한 사실이 있었으며… 위 경찰관 김해성, 권오성, 박경천 등도 그와같은 사실(성고문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감지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성고문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위 조사가 경찰서 내에 대부분이 직원이 퇴근하고 없는 토요일 깊은 밤중에 밀폐된 조사실 내에서 이루어진 사실, 검찰도 자인하듯이 당시 위 조사실 내에는 불이 꺼져있었고 바깥마당에 있는 전등의 외광만이 마당쪽에 연한 유리창을 통하여 겨우 명암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희미하게 흘러들고 있는 가운데서 문귀동과 권양 단 둘만이 대치하고 있었던 사실, 따라서 당시 조사실 바깥으로는 일반인이 왕래할 까닭도 없었거니와 설혹 누가 왕래하였다 하더라도 유리창을 통하여 조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 위 경찰관 김해성 등은 문귀동의 동료이고 검찰조사과정에서 문귀동의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한 허위진술을 일삼다가 사후에 탄로가 나자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어 그들의 진술 내용을 도저히 신빙할 수 없을뿐 아니라 설령 그들이 밀폐되어 있는 문귀동의 조사실 바깥을 왔다갔다 했다할지라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던 이상 성고문 사실을 목격할수는 없었을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그들의 진술내

용을 가지고 성고문이 없었음을 단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인지 실로 이해할 수 가없다.

이것이 우리가 검찰발표내용을 믿을 수 없는 세번째 이유이다.

(4) 검찰발표는 “권양과 함께 부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있던 최모여인(32세), 박모여인(30세) 등도… 권인숙이 폭행을 당했다는 말은 유치장에서 한 일이 있으나 성적모욕을 당했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마치 “성적모욕이 없었다”는 검찰의 결론을 뒷받침할 무슨 근거나 되는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권양이 2차성고문을 당한 직후 유치장 내에서 위 두 여인에게 차마 피해사실전부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일부분만을 이야기한 일이 있다고 하는 점은 권양이 본 변호인단 접견시(7.2.)부터 밝혔을 뿐 아니라 검찰조사과정에서도 당초부터 밝힌 바이고 강제추행을 당한 처녀가 피해사실을 곧바로 타인에게 전부 이야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위 두 여인의 진술내용이 권양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뿐만더러 우리가 알기로는 위 두여인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이 권양으로부터 “옷을 벗기고 젖가슴을 주무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그것이 어떻게 단순히 “폭행을 당했다”는 말만을 들은 것으로 둔갑하였는지도 알 길이 없다. 또 위 두여인 외에도 권양과 함께 유치장에 있었던 김철한이 권양으로부터 성고문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명백히 증언하였음에도 검찰발표에서는 이 점에 관하여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검찰의 발표내용을 믿을 수 없는 네번째 이유이다.

(5) 우리가 알기로는 부천서 형사 이홍기는 7.1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6.6.새벽 문귀동이 권양을 조사할 당시 자신이 입회한 사실 및 그 당시 문귀동이 권양의 유방을 주물르고 권양에게 발가벗고 책상위로 올라가라고 협박하고 권양의 바지 지퍼를 끌어내린 사실을 분명히 시인하였다.

또 우리가 알기로는 부천서 형사 김해성은 7.14 검찰에서 추궁당한 끝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7.밤 문귀동이 1호조사실에서 권양을 조사할 당시 자신은 맞은편 방에 있었다. 문귀동이 자신에게 수갑을 가져오라고 갖다주었으며

그때 문귀동이 책상의자에 앉고 권양이 그 앞에 꿇어앉아 있는것을 보았다. 그 후 문귀동이 권양을 데리고 단 둘이 2호조사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잠근채 조사를 하였다. 조사가 끝날 무렵 문귀동이 방문을 열고 수갑키를 달라고하여 갖다주었다. 조사시간은 분명히 기억나지 않으나 밤 8시 이후부터 10시반경쯤 되는 것 같다. 조사실안은 어두웠다. 조사도중 권양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검찰이 발표에서 “성적모욕이 없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이같은 검찰의 조사성과를 스스로 뒤엎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6.6.새벽 다른 형사가 입회한 자리에서도 “권양의 수치심을 건드리기 위하여” 옷을 벗기고 젖가슴을 “주먹으로 쥐어박았다”고 하는 문귀동이 6.7.토요일 깊은 밤중에 자신의 조사실안에서 문을 걸어잠고 불을 끈채 권양에게 수갑을 채워놓고 한시간 반 가량을 권양과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성적모욕을 가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대체 누가 믿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검찰의 발표내용을 믿을 수 없는 다섯번째 이유이다.

(6) 검찰발표에 의하면 문귀동은 수치심을 건드리기 위하여 옷을 벗게한 후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몇차례 쥐어박았다고 한다. 처녀의 가슴이란 곧 젖가슴이다. 처녀의 젖가슴을 성적모욕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구타한다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권양 자신은 시종일관 문귀동이 유방을 주물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대체 무슨 근거에서 “주무른 것과는 크게 다르고 손등으로 가볍게 툭툭 건드린 것”이라고 단정하는가? 문귀동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다는 것인가? 만일 검찰이 문귀동의 비행을 은폐한 거나 비호할 의사가 없었다면 최소한 “주물른 것인지 손등으로 건드린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라고는 말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검찰의 발표내용을 믿을 수 없는 여섯번째 이유이다.

그밖에도 우리가 검찰의 발표내용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으나,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므로 이 정도로 줄인다.

3. 우리는 권양에 비열하고 악의적인 모함과 중상으로 가득찬 “공안당국의 분석자료”라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정체불명의 “공안당국”이란 대체 누구인가? 검찰발표문에는 그같은 “분석자료”가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았으니 검찰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권양 사건을 조사한 당사자도 아닌 검찰 이외의 “공안 당국”이란 것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권양의 피해사실 주장을 “운동권 학생의 상습적인 의식투쟁의 일환”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문거니와 지금까지 “운동권학생들”이 “고문 폭행·추행 사건을 조작”한 전례라도 있단 말인가? 우리가 아는한 지금껏 양심수들이 제기한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 주장이 수사당국의 수사기피로 인하여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채 묻혀버린 일은 있을 지언정 철저한 수사 끝에 조작된 허위주장으로 판명된 사례는 단한 건도 없다. 더우기 명문대학까지 다닌 스물세살의 처녀가 어떻게 “의식화투쟁의 일환”으로 하필이면 추악한 성고문을 당하였다는 허위주장을 조작해 낼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이제 “공안당국”이 그 “분석”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객관적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어떤 논리적근거에 입각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기를 요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번의 검찰발표가 수사 이전에 이미 결론부터 내려놓은 저 “공안당국”의 “분석”에 역지로 발을 맞추기 위하여 검찰자체의 수사결론과는 상반되게 왜곡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4. 우리는 7.1.과 7.2.두차례에 걸쳐 권양을 접견하면서부터 이미 권양의 피해사실주장이 진실이라는 확고한 심증을 얻었다.

첫째로 권양의 진술태도로 보아 의심할만한 점이 전혀 없었으며, 둘째로 권양의 진술내용이 너무나도 소상하고 구체적이어서 어떤 천재적인 소설가라도 상상만으로는 꾸며낼래야 꾸며낼 수 없을 정도로 절실한 현실감이 있었으며, 셋째로 권양이 성고문사실을 폭로하게 되기까지에 이른 경위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처음에는 부모에게도 밝히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접견을 온 변호사 앞에서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물었고 망서린 끝에 성고문사실의 일부를 밝혔으며 그것이 검찰에 보고되어 검사가 묻게 되자 비로소 올면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된 것임) 넷째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갇혀있는 약자의 처지에서 막강한 국가권력을 상대로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날조해 낸다는 것은 심리법칙상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자존심있는 처녀가 당하지도 아니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검찰조사결과는 위와같은 우리의 심증이 적중

하였음을 모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써 뒷받침하였다. 우리가 검찰의 발표내용을 믿을 수 없는 여섯가지 이유는 동시에 권양의 성고문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여섯가지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6.7.밤의 조사상황에 관하여 문귀동이 처음부터 완강하게 조사시간을 밤 7:45 경부터 9:45 경까지였다고 속이고 조사실 내에 불이 켜져있었으며 3명의 형사가 입회한 가운데서 조사하였다고 거짓말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당시 문귀동이 권양의 주장내용과같은 성고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었음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넉넉히 인정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성고문이 없었다면 무엇 때문에 한시간 반 동안이나 불을 끄고 입회인도 없이 조사를 했을 것인가, 불문가지이다.

뿐더러 부친경찰서 간부진과 형사들이 공모하여 집요하게 문귀동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진술을 꾸며내었던 점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이 문귀동 일개인의 우발범행이 아니라 경찰권력 내부의 성고문계획에 따라 자행된 조직범죄였다는 사실도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확인한다.

이제 우리들 변호인단 일동은 우리의 모든 직업적 및 인간적인 긍지와 명예와 성실성을 걸고 단호하게 선언한다. 권양의 모든 주장은 단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다. 권양은 그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과 본 변호인단이 제출한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부친경찰서 내에서 필설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천인공로할 추악한 성고문의 만행을 당하였다.

이 전대미문의 만행의 진상이 백일하에 공개되고 그 관련자들이 남김없이 의법처단되기 전까지는 우리들 변호인단은 물론이요 이 나라의 모든 국민과 산천초목까지도 결코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두렵고 두렵다.

이 사건 하나에 우리 사회의 법질서와 인권과 인륜도덕의 존폐가 달려있다.

1986. 7. 18.

변호사 고평구 김상철 박원순
 이돈명 이상수 조영례
 조준희 홍성우 황인철

- 성고문추방기독교대책위원회 -

- 연락처 : [REDACTED]